

대한안경사협회 서울특별시안경사회 주관 2023년 보수교육 일정및 의기법 위반 불이익처분 사전 안내

시민들의 눈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모든 안경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2023년도 서울안경사회 보수교육 일정을 다음과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일정에 맞추어 반드시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

- 일 시 : 2023. 3. 22(수) ~ 3.24 (3일간) 09:00~13:00(오전) / 14:00~18:00(오후)
- 장 소 :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 교육시간 : 4시간(* 교육시작 10분전 입실완료)
- 지 참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일정별 지역별 상세일정》

교육일	장 소	교육시간	지 역 별
3.22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광진구 능동로 120)	09:30~12:40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
		14:20~17:10	강남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3.23		09:30~12:40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양천구
		14:20~17:10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3.24		09:30~12:40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은평구
		14:20~17:10	종로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미이행시 안경사 행정처분

- 안경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 “경고” (1차위반), “자격정지”(2차위반)
- 보수교육 미이수로 안경사 면허실태와 취업상황 미신고시 : “면허효력정지” 처분

◆ 안경업소 개설등록 변경신고시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 동시 이행 바람

- 신고대상 : 안경업소의 상호, 개설자, 소재지, 정화시설증감 등 변경시
- 신고장소 : 당해 구청 환경과 - 미이행시 : 과태료 처분 대상임

♣ 교육관련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안경사회 사무국 ☎02-393-3206